

LIST ID

--	--	--	--	--	--	--	--	--	--

승인번호  
제 383002 호

## 2023년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심층조사: 장애인 고용기업체 】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사의 답변은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사가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응답 내용은 반드시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장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응답 시 유의사항

1. 본 조사의 응답 단위는 본사, 지사, 영업소 등을 모두 포함한 **기업체 단위**입니다.
2. 따라서 개인기업체는 해당 사업체를 기준으로, 법인기업체는 동일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를 합산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조사의 기준 시점은 **지난해 말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기업체 일반 현황, 근로자 수 현황 등 모든 응답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유급으로 근무하는 귀사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월 16일 이상 유급으로 근무시 상시근로자로 인정)
5. 별도 안내문이 없는 경우 모든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각 문항마다 설명과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근로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귀사의 근로자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 사업체를 포함한 **기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특별히 문항에서 지칭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의 조사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를 인정받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포함)에 의해 상이등급 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1 지난해 말 기준 귀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상시근로자는** 몇 명이고 그 중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구 분	① 전체 (②+③)	종사상 지위별 상시근로자	
		② 정규직 근로자	③ 비정규직 근로자
A1-1-1 전체 상시근로자		명	명
A1-2-1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명



<b>정규직 근로자</b>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정해졌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속근로가 가능한 근로자 (이하 비정규직 이외의 근로자)
<b>비정규직 근로자</b>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
<b>한시적 근로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li> <li>·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간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li> <li>· 비자발적 시유계약(임금, 프로젝트 완료 등)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li> </ul>
<b>시간제 근로자</b>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b>비전형 근로자</b>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A2 지난해 말 기준 귀사의 근로자 중 **전일제 근로자와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몇 명입니까?

구 분	① 전체 (②+③)	근로 유형별 상시근로자	
		② 전일제 근로자	③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A2-1-1 전체 상시근로자		명	명
A2-2-1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명



※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A3 지난해 말 기준 귀사의 **직업별** 상시근로자는 몇 명이고 그 중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구 분	① 전체	직업별 상시근로자									
		② 관리자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종사자	⑥ 판매 종사자	⑦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⑩ 단순 노무 종사자	
A3-1-1 전체 상시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A3-2-1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대 분 류	중 분 류
관리자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경영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전문 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판매 종사자	영업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및 방문 노점 판매 관련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기죽 관련 기능직, 목재기규악기 및 긴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차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기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산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A4 지난해 말 기준 귀사의 **연령별** 상시근로자는 몇 명이고 그 중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구 分	① 전체 (②+③+④)	연령별 상시근로자		
		② 만34세 이하	③ 만35~54세 이하	④ 만55세 이상
A4-1-1 전체 상시근로자	명	명	명	명
A4-2-1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명	명	명

A5

**2022년 한 해 동안 귀사의 입사 및 퇴사 상시근로자는 몇 명이고 그 중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자발적 퇴사자와 정년퇴직,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자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分	① 2022년 입사자	2022년 퇴사자		
		② 전체 (③+④)	③ 자발적 퇴사	④ 비자발적 퇴사
A5-1-1 전체 상시근로자	명	명	명	명
A5-2-1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명	명	명



☞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명예퇴직, 계약만료, 해고(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등

A6

**2021년 말 각각 귀사의 상시근로자는 몇 명이고 그 중 장애인 근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설립연도가 2022년 이후라면 본 문항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 참고. 2021년 말 전체 상시근로자 수 = 2022년 말 전체 상시근로자 수 - 2022년 입사자 + 2022년 퇴사자

구 分	2021년 12월 31일 기준
A6-1-1 전체 상시근로자	명
A6-2-1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 B. 모집과 채용

▣ 다음은 모집과 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의 응답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B1 귀사는 장애인 근로자를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했습니까?

-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용(일반채용)
- ② 채용계획인원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인원을 장애인으로 할당하여 채용
- ③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공개 채용
- ④ 장애인의 경우 인사추천을 받아 개별 채용

B2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주로 이용한 모집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취업알선기관 및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
- ② 기업 자체적으로 모집



- ① 취업알선기관 및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 ↗ 공공/민간 기관을 통해 인력을 추천 또는 연계 받거나, 공고 및 채용하는 경우
- ② 기업 자체적으로 모집 ↗ 자사 홈페이지 공고, 내부 임직원 추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고 및 채용하는 경우

B3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주로 이용했던 취업알선기관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
- ②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③ 지방자치단체(일자리지원센터)
- ④ 민간공공 포함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 ⑤ 장애인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 ⑥ 학교(일반학교, 특수학교 포함)
- ⑦ 민간 취업알선업체
- ⑧ 국가보훈처
- ⑨ 기타(적을 것: \_\_\_\_\_)
- ⑩ 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적 없음 → 1순위 응답인 경우 B4로 이동



- ① 훈련센터 : 맞춤훈련센터, 별달장애인훈련센터

B3-1 위 문항(B3)에서 1순위로 응답한 취업알선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③ 조금 도움이 됨
- ④ 매우 도움이 됨

B3-2 위 문항(B3)에서 1순위로 응답한 취업알선기관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B3-3으로 이동
- ② 불만족 → B3-3으로 이동
- ③ 보통 → B4로 이동
- ④ 만족 → B4로 이동
- ⑤ 매우 만족 → B4로 이동

B3-3 [서비스에 불만족한 경우(B3-2=①, ②)만 응답]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하는 역량수준의 인력을 제공받지 못해서
- ② 제공받은 인력의 근속기간, 근무태도 등의 문제로
- ③ 서비스 이용 절차가 복잡해서
- ④ 서비스 신청 후 알선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서
- ⑤ 서비스 홍보, 접근성이 미흡해서
- ⑥ 사후조치 및 사후지원이 미흡해서
- ⑦ 기타(적을 것: \_\_\_\_\_)

B4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주로 이용했던 자체 모집 경로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① 신문·TV 등 언론매체  
② 자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③ 내부 임직원 추천  
④ 기타(적을 것: \_\_\_\_\_)  
⑤ 기업 자체적으로 모집한 적 없음

B5 귀사가 장애인 채용 과정에서 배려했던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가산점 부여  
② 연령조건 완화  
③ 학력조건 완화  
④ 자격요건 완화(토익, 자격증 등)  
⑤ 정당한 편의 제공  
⑥ 전형과정 완화(필기전형, 신체검사 규정완화 등)  
⑦ 기타(적을 것: \_\_\_\_\_)  
⑧ 특별히 배려한 사항 없음



⑤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이 채용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의미

B6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장애관련	① 장애유형	② 장애정도(중·경증여부)	③ 의사소통능력	④ 이동·동작수행능력
직업적 능력 관련	⑤ 경력	⑥ 학력(교육정도)	⑦ 자격증 취득 사항(기술보유)	
인적특성 관련	⑧ 성별	⑨ 연령	⑩ 성품·태도(책임감 등)	
기타	⑪ 기타(적을 것: _____)			

B7 귀사의 채용 전형에서 장애인 응시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다?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필기시험(NCS평가,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등)  
② 실기(기능) 시험  
③ 면접(집단토론 등 포함)  
④ 신체검사  
⑤ 기타(적을 것: \_\_\_\_\_)

귀사의 채용에 응시한 장애인 응시자들이 서류나 면접 전형 등 심사 과정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점은

B7-1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① 응시 서류 작성 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  
② 필기시험 및 실기(기능)에 대한 지식  
③ 뚜렷한 목표 의식  
④ 화술 및 의사 전달 능력(면접기술)  
⑤ 순발력 및 대처능력  
⑥ 응시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 인지  
⑦ 기타(적을 것: \_\_\_\_\_)

B8 귀사는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셨습니까?

- ① 매우 어려웠다  
②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  
③ 보통  
④ 다소 용이한 편이었다  
⑤ 매우 용이했다

B9

귀사가 장애인을 채용할 때 경험한 주된 애로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 ②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
- ③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 ④ 사업주, 관리자, 동료 등이 채용에 대해 소극적
- ⑤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⑥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 ⑦ 출퇴근 상의 어려움 때문에(이동거리, 출퇴근 차량 지원 등)
- ⑧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 ⑨ 기타(직을 것: )
- ⑩ 특별한 애로사항 없었음

B10

귀사에서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가장 큰 주체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경영진(사업주·임원·이사회 등)
- ② 인사관련업무 담당부서(인사팀·총무팀·경영관리팀 등)
- ③ 인력 수요 부서
- ④ 노동조합 등 사내 기구
- ⑤ 사외 기구·기관·단체 등
- ⑥ 기타(직을 것: )

B11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주된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①: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가 없음을 주의

- ①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 ② 장려금 지원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때문에
- ③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 ④ 장애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함
- ⑤ 입사 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임을 알게 됨
- ⑥ 기타(직을 것: )

## C. 업무특성 및 노무관리

▣ 다음은 업무특성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귀사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항에서 지칭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의 조사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C1

귀사의 전체 상시근로자는 고용직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장 많은 근로자와 두 번째로 많은 근로자**가 해당되는 고용직업분류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구분	가장 많은 전체근로자	두 번째로 많은 전체근로자
C1-1-1 고용직업분류	□□	① 모두 동일한 일을 한다 → C2로 이동 ② □□
C1-1-2 전체 장애인근로자 대비 인원	_____명 □□%	_____명 □□%
C1-1-3 필요한 학력 수준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대졸            ④ 석박사 이상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대졸            ④ 석박사 이상

C2

그럼 귀사의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고용직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합니까? **가장 많은 장애인 근로자와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되는 고용직업분류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 장애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응답해주세요.

구분	가장 많은 장애인근로자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근로자
C2-1-1 고용직업분류	□□	① 모두 동일한 일을 한다 → C3으로 이동 ② □□
C2-1-2 전체 장애인상시근로자 대비 인원	_____명 □□%	_____명 □□%
C2-1-3 필요한 학력 수준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대졸            ④ 석박사 이상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대졸            ④ 석박사 이상

C2-2

귀사에는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습니까?

- ① 대부분의 업무에서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
- ② 제한적인 업무에 한하여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다
- ③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만한 직무를 찾기 힘들다

☞ 다음부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C3 귀사의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구 분	전체 상시 근로자
C3-1 주당 정규(소정) 근로시간	시간/주
C3-2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주



※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규칙적인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불근로시간(식사 시간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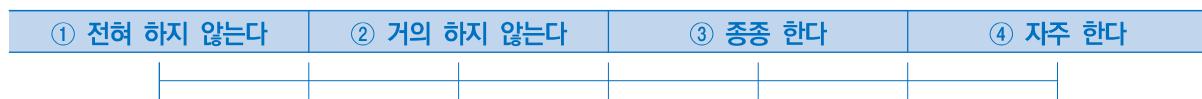
※ 평균 근로시간: (월등임금에 대한 고려 없이) 실제로 일하는 평균 근로시간으로 기본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휴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C4 귀사의 소정 근로일수는 주당 며칠입니까?



※ 소정 근로일 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C5 귀사의 근로자는 정규(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로를 어느 정도 하시는 편입니까?



※ 초과근로: 정규(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

C6 귀사에 도입되어 있는 유연근로제도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운영근로제도란 정규 근로자가 공식 근로시간제를 변경해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형태를 의미합니다.

- ① 근로시간단축 근무제      ② 시차 출퇴근제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④ 재택 및 원격근무제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      ⑥ 기타 유형(재량근무 등)  
⑦ 해당 없음 → C7로 이동



근로시간단축 근무제	육아, 학업,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여서 근무
시차출퇴근제	1일 소정 근로시간 내 개인별 출퇴근 시간 자율적 조정(10사~19시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1일 소정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자율 조정
자택 및 원격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원격 근무용 모비일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
자량 근무	소정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88 / 1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C6=①,②,③,④,⑤,⑥)만 응답]

구사에서는 **장애의 균류자**가 음연금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선정하는 등의 제도나 지침이 있습니다.

- ① 관련 제도나 지침이 있음
  - ② 과열 제도나 지침이 없음(비장애이 그로자와 차이 없음)

▣ 다음부터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C7 귀사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각의 임금 및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항 목	지급 여부	
	지급	미지급
C7-1 연봉/월급/주급/시급/일당이 정해진대로 지급(기본급)	①	②
C7-2 제품 생산하는 만큼 받음/개인 성과만큼 지급(성과급)	①	②
C7-3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잔업수당을 일한 시간만큼 지급	①	②
C7-4 열악하거나 위험한 근무조건을 보상하는 수당(위험 수당) 지급	①	②
C7-5 휴일 수당/특근 수당 지급	①	②
C7-6 회사의 전반적인 성과에 따른 수당(인센티브)을 지급	①	②
C7-7 소속 팀(부)의 성과에 따라 수당(인센티브)을 차등하여 지급	①	②
C7-8 회사의 배당금(자사 주식) 지급	①	②
C7-9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지급	①	②

C8 귀사의 작년 한 해 근로자 1명당 월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각각 얼마였습니까?

- ▣ 전체 및 장애인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을 기재  
▣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 장애인 포함 월평균 총 임금 / 총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 = 장애인 근로자 총 임금 / 총 장애인 근로자 수

구 분	2022년 1인당 월평균 임금(세전)
C8-1-1 전체 상시근로자	만원
C8-1-2 그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만원

▣ 다음부터는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C9 귀사는 다음 각각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항 목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C9-1 고용보험	①	②
C9-2 산재보험	①	②

C10 귀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부터는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C11 귀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항 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C11-1 유급휴일휴가	①	②
C11-2 병가	①	②
C11-3 출산휴가/육아휴직(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제도)	①	②
C11-4 주거비 보조(전월세자금 지원 등), 주거 공간 제공(임대주택(사택), 기숙사 등)	①	②
C11-5 건강보건에 관한 비용 지원(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등)	①	②
C11-6 식사비 보조(급식시설 운영, 외부식당 이용, 식권 제공 등)	①	②
C11-7 문화·체육·오락비용 보조(도서관, 휴게실, 운동장, 체육관 사워장, 사내동호회 지원 등)	①	②
C11-8 보험료지원(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 등의 사보험료 지원)	①	②
C11-9 경비 지원(결혼·출산축의금, 사망조의금, 상병위로금 등)	①	②
C11-10 자녀학비보조(근로자 자녀의 정규 학교 학자금 등)	①	②
C11-11 근로자휴양(휴양소, 콘도미니엄, 상여에 포함되지 않는 하계휴가비 등)	①	②
C11-12 통근 비용 지원(통근버스, 출퇴근비용, 통근수당 지원 등)	①	②
C11-13 자기계발 지원(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학원비 포함)	①	②

C12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복리후생 사항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직업생활상담원, 수어통역사, 근로지원인 등)
- ②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 ③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
- ④ 장애인 근로자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나 장치, 교육 등 조치
- ⑤ 건강프로그램·상담프로그램 등 운영
- ⑥ 별도수당 지급 등 금전적 지원
- ⑦ 별도 휴게시간 부여
- ⑧ 동료 근로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동호회 활동 등 지원
- ⑨ 기타(적을 것: \_\_\_\_\_)
- ⑩ 특별히 없음



- ① 장애인 고용 지원인력 배치: 장애인의 근무 안정을 위해 직업생활상담원, 수어통역사, 근로지원인 등을 배치한 경우  
단,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고용한 통역사, 활동지원사는 해당되지 않음
- ② 타 직무로의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 업무량, 업무 시간 조정

C13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가 주로 호소하는 고충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①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문제
- ② 개인적 사유(학업, 육아, 가사 등)
- ③ 대인관계 문제
- ④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임금, 복리후생, 인사, 근무강도 등)
- ⑤ 근무환경문제(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 ⑥ 장애로 인한 직무의 제한 또는 어려움
- ⑦ 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 ⑧ 기타(적을 것: \_\_\_\_\_)
- ⑨ 없음 → 1순위 응답 시 C14로 이동

C13-1 [고충이 있는 경우(C13=①~⑧)만 응답]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고충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C10=②) ④ 노동조합을 통해서 응답 불가

- |                          |              |
|--------------------------|--------------|
| ①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 이용        | ② 인사담당자와의 면담 |
| ③ 임원 또는 관리자와의 면담         | ④ 노동조합을 통해서  |
| ⑤ 전문 상담원을 통해서(직업생활상담원 등) | ⑥ 각자 스스로 해결  |
| ⑦ 기타(적을 것: _____ )       |              |

C14 현재 귀사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전담하는 고충 처리자나 노무 관리자가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가 중복되는 인력은 수행했던 업무 유형 모두 선택

(예: 인사노무 담당자가 직업생활상담원 역할도 하는 경우 ①, ② 모두 선택)

- |                      |                    |
|----------------------|--------------------|
| ①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업무 담당자 | ② 직업생활상담원          |
| ③ 작업지도원              | ④ 수어통역사            |
| ⑤ 사회복지 전문 인력         | ⑥ 의료지원 인력          |
| ⑦ 근로지원인              | ⑧ 기타(적을 것: _____ ) |
| ⑨ 없음                 |                    |

C15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서 귀사의 애로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고려(승진, 전보, 교육 등) | ②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
| ③ 근속, 근무태도 관련                 | ④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         |
| 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 ⑥ 상사 또는 동료직원들과의 불화, 선입견 |
| ⑦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 ⑧ 기타(적을 것: _____ )      |
| ⑨ 없음                          |                         |

☞ 다음은 귀사의 이직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C16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귀사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률은 어떠합니까?

- |          |             |
|----------|-------------|
| ① 매우 낮다  | → C17로 이동   |
| ② 낮은 편이다 | → C17로 이동   |
| ③ 비슷하다   | → C17로 이동   |
| ④ 높은 편이다 | → C16-1로 이동 |
| ⑤ 매우 높다  | → C16-1로 이동 |

C16-1 [이직률이 높은 경우(C16=④, ⑤)만 응답]

장애인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① 낮은 월급(연봉)에 대한 불만      | ②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만족               |
| ③ 대인관계 문제(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 | ④ 부당한 대우로 인해(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등) |
| ⑤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 ⑥ 복지제도,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            |
| ⑦ 출퇴근이 불편해서             | ⑧ 계약해지 또는 정리해고                 |
| ⑨ 기타(적을 것: _____ )      |                                |

C17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바라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업무실적 향상         | ②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
| ③ 건강관리            | ④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
| ⑤ 장기근속            | ⑥ 출퇴근 및 근무시간 관리 |
| ⑦ 기타(적을 것: _____) | ⑧ 특별히 없음        |

## D. 업무환경

▣ 다음은 업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문항에서 지칭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의 조사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D1

귀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다음 각 항목별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D1-1 출퇴근이 용이하다(대중교통 부재, 짧은 시간 소요 등)	①	②	③	④	⑤
D1-2 목표 업무량, 업무시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1-3 근로자가 원하면 직무조정(업무내용, 업무량 조정)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D1-4 상하 직급 간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D1-5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2

귀사의 사업장 환경에 대해 다음 각 항목별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의 업무환경을 '③ 보통'으로 하여 각 환경에 대해 평가를 진행

구 분	쾌적		불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D2-1 주사업장은 먼지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D2-2 주사업장은 소음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D2-3 주사업장은 불쾌한 냄새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불쾌		쾌적		불쾌
	매우 어둡다/ 춥다/ 건조하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너무 밝다/ 덥다/ 습하다
D2-4 주사업장은 밝다	①	②	③	④	⑤
D2-5 주사업장은 덥다	①	②	③	④	⑤
D2-6 주사업장은 습하다	①	②	③	④	⑤
구 분	낮은 물리적 부담		높은 물리적 부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D2-7 주사업장 내 활동(이동) 반경이 넓다	①	②	③	④	⑤
D2-8 휴게 공간 및 편의시설* 등이 열악하다	①	②	③	④	⑤
D2-9 물리적으로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 편의시설: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예: 휴게실, 공중 화장실, 엘리베이터, 사위실, 세탁실 등)

D3 귀사의 주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는 사고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적인 자세,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신체적 부담 관련 위험
- ② 추락, 감전, 밀폐, 미끄러짐 등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 ③ 프레스기, 분쇄기 등 위험한 기계, 기구의 작동
- ④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 차별 등에 의한 정신적, 심리적 위험
- ⑤ 소음, 진동, 고온/저온 등 물리적(환경적) 위험
- ⑥ 염소, 산·알칼리류 등에 의한 화학물질 위험
- ⑦ 바이러스 감염 등 생물학적 위험
- ⑧ 기타(적을 것: )
- ⑨ 특별히 없음

D4 2022년 한 해 동안 일자리에서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며, 그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 인원 수가 아닌 건수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명이 연중 2회 사고가 발생했다면 2명으로 기입합니다.

구 분	① 2022년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 발생 근로자 수	② 그 중 산재 인정 근로자 수
D4-1-1 전체 상시근로자	명	명
D4-1-2 그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명

D4-2 귀사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업무상 사고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람·뒤집힘	④ 부딪힘
	⑤ 물체에 맞음	⑥ 끼임	⑦ 절단·베임·찔림	⑧ 교통사고
	⑨ 무리한 동작	⑩ 기타(적을 것: )		
업무상 질병	⑪ 진폐	⑫ 난청	⑬ 중독	
	⑭ 그 외 직업병(직업성 암, 피부질환 등)			
	⑮ 뇌·심질환	⑯ 근골격계질환(요통 포함)		
작업 관련성 질병	⑰ 그 외 작업관련성 질병(간질환, 정신질환 등)			
⑯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이 없음				

D4-3 귀사에서 업무관련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 ① 산재 인정 및 보상처리를 지원하였다
- ②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을 제공하였다
- ③ 병가를 최대한 제공하였다
- ④ 비급여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다
- ⑤ 사업체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였다
- ⑥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부서 및 직무를 재배치하였다
- ⑦ 직업재활서비스 또는 사회재활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⑧ 직무수행 및 회사생활이 어려운 경우 퇴사를 권유하였다
- ⑨ 기타(적을 것: )
- ⑩ 특별히 취한 조치나 지원은 없었다

D5 귀사는 근로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 ② 화학 물질 관리를 위한 활동
- ③ 보호구 지급 및 사용에 대한 활동
- ④ 위험기계·기구 관리를 위한 활동
- ⑤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
- ⑥ 산재예방 관련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방법 교육
- ⑦ 기타(적을 것: \_\_\_\_\_)
- ⑧ 별도 활동 및 지원 없음

D6 귀사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문서로 작성된 **제도, 관리시스템 또는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① 관련 제도, 시스템 및 대처방안이 있음
- ② 관련 제도, 시스템 및 대처방안이 없음 → D7으로 이동

D6-1 [관련 제도, 시스템 및 대처방안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만(D6=①) 응답]

그렇다면 해당 제도나 시스템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자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자침이 별도로 있음
- ②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자침이 별도로 없음

D7 귀사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에 대해 다음 각 항목별로 그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D7-1 경영에서 안전보건의 우선순위는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D7-2 계획 수립 및 관리, 교육 등 안전보건 관련 제반 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7-3 안전보건을 위한 시설·장비·보호구 등이 잘 설치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7-4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특화된 안전보건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D7-5 장애인근로자는 안전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D8 귀사가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활동을 마련하거나 수행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① 별도 예산, 시간 등의 자원 부족
- ② 관련 조직이나 전문인력 부재
- ③ 관련 기술이나 정보의 부족
- ④ 조직 내 인식, 문화의 문제
- ⑤ 경영진의 의지 부족
- ⑥ 장애인근로자의 참여와 이해의 부족
- ⑦ 기타(적을 것: \_\_\_\_\_)
- ⑧ 특별히 없음

D9

귀하(귀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D9-1으로 이동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D9-1으로 이동
- ③ 모르겠다 → D10으로 이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D9-1

그렇다면 귀사의 주사업장은 해당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까?

- ① 의무 사업장이다
- ② 의무 사업장이 아니다
- ③ 모르겠다



※ 편의시설: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따라서 결국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임)

D10

귀사의 근로자가 일하는 주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귀사의 주사업장이 단층건물이라면 D10-1-7, D10-1-8은 ⑨비해당으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비해당
D10-1-1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보도)	①	②	
D10-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①	②	
D10-1-3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차이 제거	①	②	
D10-1-4 높이차이(단차)가 없는 출입문	①	②	
D10-1-5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양측 손잡이 설치 등)	①	②	
D10-1-6 복도/통로의 손잡이	①	②	
D10-1-7 계단 양측 손잡이(2층 이상 건물)	①	②	⑨
D10-1-8 장애인용 승강기(2층 이상 건물)	①	②	⑨
D10-1-9 점자블록	①	②	
D10-1-10 비상벨, 경광등	①	②	

→ 10개 항목 중 ① 설치 응답이 1개라도 나온 경우 D10-2로 이동, 그 외 D11로 이동

D10-2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나 근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큰 도움이 된다

D11 구사에 향후 설치가 필요한 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 이미 설치되었더라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면 응답해주세요.

▣ 귀사의 주사업장이 단층건물이라면 D11-1-7, D11-1-8은 ⑨ 비해당으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비해당
D11-1-1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보도)	①	②	
D11-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①	②	
D11-1-3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차이 제거	①	②	
D11-1-4 높이차이(단자)가 없는 출입문	①	②	
D11-1-5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양쪽 손잡이 설치 등)	①	②	
D11-1-6 복도/통로의 손잡이	①	②	
D11-1-7 계단 양측 손잡이(2층 이상 건물)	①	②	⑨
D11-1-8 장애인용 승강기(2층 이상 건물)	①	②	⑨
D11-1-9 점자블록	①	②	
D11-1-10 비상벨, 경광등	①	②	

→ 10개 항목 중 ① 필요함 응답이 1개라도 나온 경우 D12로 이동, 그 외 D13으로 이동

D12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는 위와 같은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다	③ 필요로 하는 편이다	④ 매우 필요로 한다

D12-1 귀사는 장애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과 상관없이 설치할 의향이 있다
  - ②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설치할 의향이 없다
  - ③ 비용이 적게 들어도 회사에서 설치할 의향은 없다
  - ④ 회사 소유의 사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설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D13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는 근무 시 필요한 작업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가 있습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필요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구 분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D13-1-1 정보접근을 위한 작업보조기기 : 서류읽기, 책읽기, 컴퓨터 사용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보조기기 (예: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음성출력 소프트웨어 등)	①	②
D13-1-2 의사소통을 돋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돋는 보조공학기기(예: 소리 증폭기, 수화를 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 버튼을 눌러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음성 및 말하기용기기 등)	①	②
D13-1-3 작업을 돋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 작업생활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돋는 보조공학기기 (예: 전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 테이블, 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작업물운송장치, 특수작업의자 등)	①	②
D13-1-4 사무보조를 돋기 위한 작업보조기기 : 일반적인 사무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작업보조기기(예: 전화기를 고정시켜두는 수화기 훌더, 손의 힘이 약하거나 잘 잡지 못해도 필기를 할 수 있도록 필기구를 손에 고정시켜주는 필기보조도구 등)	①	②

→ 4개 항목 중 ① 필요 응답이 1개라도 나온 경우 D13-2로 이동, 그 외 E1로 이동

D13-2

귀사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과 상관없이 제공할 의향이 있다
- ②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제공할 의향이 없다
- ③ 비용이 적게 들어도 회사에서 제공할 의향은 없다

## E. 교육훈련

▣ 다음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귀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문항에서 지칭하지 않는 한 모든 질문의 조사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귀사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1** 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직무관련 대학원 비용지원, 교육을 위한 휴가지원, 사내 직무관련 학습 모임 지원 등도 포함)

① 예 → **E2**로 이동

② 아니오 → **E1-1**으로 이동



### ※ '교육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고 구조화되어 작업장 내 또는 작업장 밖(강의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이러한 교육훈련에는 직업훈련, 산업안전교육, 노사관계 교육, 팀워크 형성을 위한 조직개발 활동, 개인의 학원대학(대학원) 수강료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이 포함되지만,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이나 단순히 동료나 선배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현장훈련은 제외

**E1-1** 귀사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업무가 단순하여 업무 특성상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다
- ②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을 시킬 여력이 없다
- ③ 인력난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주기 어렵다
- ④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교육훈련의 이점이 없다
- ⑤ 회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없다
- ⑥ 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아 기업에 도움이 안된다
- ⑦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 ⑧ 교육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이해가 낮다
- ⑨ 필요한 숙련이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 ⑩ 기타(적을 것: \_\_\_\_\_ )

→ **F1**으로 이동

**E2** 귀사에서 작년 한 해 실시하거나 지원한 **교육훈련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집단 사내교육훈련              | ② 집단 사외교육훈련                 |
| ③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훈련(원격학습 등)  | ④ 사내 직무관련 학습모임 지원           |
| ⑤ 수탁·협력업체에 기술지도 및 근로자 연수 | ⑥ 모기업·위탁업체로부터 기술지도 및 근로자 연수 |
| ⑦ 유급 또는 무급의 교육훈련휴가제      | ⑧ 훈련기관(학원 포함) 수강료 지원        |
| ⑨ 교육기관(대학 등) 학자금 지원·대부   | ⑩ 근로시간 중 교육훈련 수강 배려         |
| ⑪ 기타(적을 것: _____ )       |                             |

**E3** 귀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각각 연간 총 몇 명입니까?

▣ 인원 수가 아닌 건수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명이 연중 2회 교육을 받았다면 2명으로 기입합니다.

구 분	2022년 연간 교육인원
<b>E3-1</b> 전체 상시근로자	명
<b>E3-2</b> 그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명

E4 귀사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
|--------------|---------------------|-----------------|
| ① 경영전략·기획    | ② 인적자원관리 교육         | ③ 영업·마케팅교육      |
| ④ 품질·생산관리 교육 | ⑤ 기술개발교육            | ⑥ 세무·재무·회계관리 교육 |
| ⑦ IT정보화 교육   | ⑧ 소양교육(서비스, 커뮤니케이션) | ⑨ 어학교육          |
| ⑩ 기타(적을 것: ) |                     |                 |

E5 귀사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분야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
|--------------|---------------------|-----------------|
| ① 경영전략·기획    | ② 인적자원관리 교육         | ③ 영업·마케팅교육      |
| ④ 품질·생산관리 교육 | ⑤ 기술개발교육            | ⑥ 세무·재무·회계관리 교육 |
| ⑦ IT정보화 교육   | ⑧ 소양교육(서비스, 커뮤니케이션) | ⑨ 어학교육          |
| ⑩ 기타(적을 것: ) |                     |                 |

E5-1 그렇다면, 귀사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주로 참여했던 교육훈련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5-2 귀사가 장애인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실시 및 지원하는데 주된 애로사항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
| ① 교육훈련 예산 부족                       |  |
| ② 교육훈련 인원 차출에 따른 업무 공백             |  |
| ③ 필요로 하는 분야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부족 또는 부재 |  |
| ④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부족                   |  |
| ⑤ 장애인 근로자의 낮은 훈련 참여도               |  |
| ⑥ 경영진의 교육훈련에 대한 낮은 이해와 관심          |  |
| ⑦ 기타 (적을 것: )                      |  |
| ⑧ 특별한 애로사항 없었음                     |  |

## F.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입니다.

F1

귀사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 ▣ 귀사가 장애인 고용의무 업체가 아니라면(상시근로자 50인 미만) F1-1에 ⑨를 응답해주세요.
- ▣ 귀사가 장애인 고용의무 업체가 아니거나(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장애인 관련 재무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F1-2에 ⑨를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F1-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F1-2 고용부담금 감면, 고용장려금 수급, 각종 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무적 성과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⑨
F1-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F1-4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고용유지가 이뤄졌다	①	②	③	④	⑤	
F1-5 기업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F1-6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F2

귀사는 다음의 항목별로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F2-1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①	②	③	④	⑤
F2-2 장애인 근로자의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F2-3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업무능력	①	②	③	④	⑤
F2-4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 G. 고용서비스 이용 및 욕구

▣ 다음은 귀사가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과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파트는 지난 1년이 아닌 최근 3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최근 3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G1 나님 경극 중 1시에서 되는 3분간 중에는 고군과 고군이여 국가를 사랑해 모든 경애하고 있는 모든 이들께 고마워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원을 받았다면 소기에 목적한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도 응답해주세요.

☞ 이용경험이 있다(A 이용 경험=①)고 응답한 경우만, 성과 정도(B)를 응답해주세요.

항 목	A. 이용 경험		B. 성과 정도 (①~⑤, ⑨)
	있음	없음	
G1-1-1 구직자 추천 등 채용지원 장애인고용컨설팅, 모집대행 및 홍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평가, 장애인 인턴제 등	①	②	( )
G1-1-2 장애인이 취업한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근로지원인, 작업지도원, 작업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설 융자지원, 유연근로제, 출퇴근 지원 등	①	②	( )
G1-1-3 장애인 교육훈련 지원 재직근로자 능력 향상 훈련, 수요자 중심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등	①	②	( )
G1-1-4 재정적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임금지원 등	①	②	( )
G1-1-5 기타 (적을 것: )	①	②	( )

## ☞ B. 성과 정도 응답 척도



☞ G1-2~G1-2-2까지는 장애인 채용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체(G1-1-1 A=① 있음)만 응답해주세요.

G1-2 귀사가 채용지원 서비스를 받은 기관은 어디인가? 주로 이용한 기관은 어디인가?

- ①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
  - ③ 지방자치단체(일자리지원센터)
  - ④ 장애인 복지관
  - ⑤ 기타(작을 것: )

## G1-2-1 해당 기관(G1-2 응답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구사에서 담초 목표한 만큼의 잡아인을 채용했습니다?

- ① 목표한 만큼의 장애인을 채용했다
  - ② 목표한 만큼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었다
  - ③ 해당기관의 서비스를 통해서는 장애인을 거의 채용하지 못했다
  - ④ 현재 구직자 충청 등 채용지원이 진행 중이다

**G1-2-2** 해당 기관(G1-2 응답 기관)의 서비스를 향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많이 있다

☞ G1-3~G1-3-1까지는 장애인 교육훈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기업체(G1-1-3 A=① 있음)만 응답해주세요.

**G1-3**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주로 이용하는 기관 하나만 응답해주세요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기능대학(폴리텍 대학 등)      ④ 지방자치단체(일자리지원센터)  
⑤ 중소기업청  
⑥ 국가의 지원을 받은 민간 직업훈련 학교(학원)  
⑦ 기타(적을 것: )

**G1-3-1** 해당 기관(G1-3 응답 기관)의 교육훈련은 귀사의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훈련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교육훈련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① 전혀 향상이 없다 (없을 것이다)	② 향상이 없는 편이다 (없을 것이다)	③ 다소 향상이 있었다 (있을 것이다)	④ 큰 향상이 있었다 (있을 것이다)

☞ 앞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채용 및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응답하셨다면,

다음부터는 향후 이용의향 및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다음은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G2

귀사는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현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각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항 목	필요 여부		
	시급히 필요	필요	불필요
G2-1-1 기업에 적합한(필요한) 인력 추천(구인서비스)	①	②	③
G2-1-2 모집대행 서비스	①	②	③
G2-1-3 직무분석 컨설팅 및 기업체 내 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①	②	③
G2-1-4 사전 현장훈련을 통해 직무에 적응 후 근로(채용) (현장훈련이나 인턴활동 후 취업)	①	②	③
G2-1-5 현장에서 일정기간 직무체험을 통해 기업에서 적합장애인 탐색할 기회 제공 (현장평가, 지원고용)	①	②	③
G2-1-6 현장 직무에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일정기간(1달 이상) 수행하는 훈련 제공 (맞춤훈련)	①	②	③
G2-1-7 기업의 장애인 고용환경 분석·진단부터 적합인력 지원까지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설계를 위한 지원	①	②	③
G2-1-8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③

→ 8개 항목 중 ① 시급히 필요, ② 필요 응답이 1개라도 나온 경우 G2-2로 이동, 그 외 G3으로 이동

G2-2

귀사가 향후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
- ②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 ③ 지방자치단체(일자리지원센터)
- ④ 장애인 복지관
- ⑤ 기타(적을 것: \_\_\_\_\_ )

다음은 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고용윤지 지원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62. 귀사에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현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각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항 목	필요 여부		
	시급히 필요	필요	불필요
G3-1-1 재직 장애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①	②	③
G3-1-2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작업지도원 등)	①	②	③
G3-1-3 사업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진단 및 인증서비스 지원	①	②	③
G3-1-4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작업보조(보조공학) 기기 무상 지원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특수키보드, 확대독서기 등)	①	②	③
G3-1-5 출퇴근 지원(출퇴근 비용지원, 이동수단 제공 등)	①	②	③
G3-1-6 직업생활, 고충처리 상담 인력 및 비용 지원	①	②	③
G3-1-7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③

「장애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이 필요하다는 기업체(G3-1-1=①, ②)만 응답」

G3-2 귀사가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수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기능대학, ④ 지자체 직업전문학교, ⑤ 중소기업청은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받는 교육훈련이며,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이다

-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 ③ 기능대학(폴리텍 대학 등)
  - ④ 지방자치단체 직업전문학교
  - ⑤ 중소기업청
  - ⑥ 국가의 지원을 받은 민간 직업훈련 학교(학원)
  - ⑦ 기타(적을 것: )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체(G3-1-2=①, ②)만 응답

G3-3 구사는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도와줄 외부인(근로지원인 등) 활용을 요청할 경우,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① 회사 여건상 어려울 것 같다
  - ②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향이 있다
  - ③ 회사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향이 있다

☞ 다음은 '재정지원 및 경영지원 등 기타지원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G4

귀사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재정지원 및 경영지원 등 기타 지원 사항' 중 어떠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현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각 서비스의 필요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항 목	필요 여부		
	시급히 필요	필요	불필요
G4-1-1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 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비용 지원	①	②	③
G4-1-2 특정 장애인(중증, 고령, 여성 등)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등에 비용의 추가 지원	①	②	③
G4-1-3 장애인 직접고용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고용의무를 달성하여 사업주에게 부담금 감면 (예: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직업재활시설 등)에 생산품 도급을 주어 납품 받은 사업주에게 부담금 감면)	①	②	③
G4-1-4 장애인에게 인턴근무 기회 제공 시 임금지원(장애인 인턴지원금,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①	②	③
G4-1-5 장애인 다수 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융자 및 세제 감면	①	②	③
G4-1-6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출퇴근용 승합차의 구입·설치·수리 등 지원	①	②	③
G4-1-7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진단 서비스 및 인증서비스 지원	①	②	③
G4-1-8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③

☞ 다음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G5

귀사는 다음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그런 의무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④ 모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7년 11월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교육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18.5.29.시행).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이고, 교육방법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6 귀사는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 ① 예 → G6-1로 이동  
② 아니오 → G7으로 이동

G6-1 2022년 귀사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내외부 강의자료, 인터넷 강의(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② 무료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실시하였다  
③ 관련 교육기관(전문 강사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④ 기타(적을 것: \_\_\_\_\_)

G6-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효과와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G6-2-1 교육참여자들이 장애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G6-2-2 교육참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G6-2-3 향후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G6-2-4 전반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G6-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기업체(G6-2-4=①,②)만 응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시간 또는 횟수가 부족했다  
② 교육내용이 미흡했다(재미가 없었다)  
③ 교육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  
④ 강사의 강의역량이 부족했다  
⑤ 장애인 인식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족했다  
⑥ 기타(적을 것: \_\_\_\_\_)

G7 귀사에서 올해(2023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 조사시점 기준 2023년 이미 실시한 경우 '① 2023년에 이미 실시하였다'로 응답

- ① 2023년에 이미 실시하였다  
② 내외부 강의자료, 인터넷 강의(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다  
③ 전문강사 등의 지원이 있으면 실시할 의향이 있다  
④ 관련 교육기관(전문강사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실시할 의향이 있다  
⑤ 실시할 의향이 없다

▣ 다음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G8

귀사는 다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10인 이상,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 고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10억원의 무상지원금 지급, 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제공함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 없는 편이다	③ 관심 있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이 많다

G8-1

귀사는 향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이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았다
-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의향이 있다
-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의향이 없다

G9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체(A1-1-1의 ① 전체 근로자  $\geq$  300)]

귀사는 다음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 및 지원**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별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 없는 편이다	③ 관심 있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이 많다

G9-1

귀사는 향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이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였다
- ②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의향이 있다
- ③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의향이 없다

▣ 다음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G10

귀사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②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③ 그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 ④ 거의 모른다
- 응답 후 아래 자시문 설명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사업자활법」제27조, 제28조의 2 및 시행령 제25조 )**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1991년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함

2023년 현재 민간사업주는 매월 상시근로자의 3.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3.6%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G11

귀사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제도**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                        |               |
|------------------------|---------------|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③ 그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 ④ 거의 모른다      |

G12

귀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1%, 공공기관은 3.6%)**을 달성하셨습니까?

중증장애인 고용 2배수 인정 등을 감안하여 응답해주세요.

- |                              |           |
|------------------------------|-----------|
| ① 달성했다                       | → G13로 이동 |
| ② 달성하지 못했다                   | → G14로 이동 |
| ③ 고용의무 대상이 아니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 G15로 이동 |

G13

**[의무고용률 달성업체(G12=①)만 응답]**

귀사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지만 향후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 |   |
|---|
| ① 의무고용률 달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것이다 → G13-1 전체 근로자의 □□%까지 채용 예정 |
| ②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                         |

G14

**[의무고용률 미달성업체(G12=②)만 응답]**

귀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 달성할 의지가 전혀 없다	② 달성할 의지가 없는 편이다	③ 달성할 의지가 있는 편이다	④ 달성할 의지가 매우 강하다

G14-1

**[의무고용률 미달성업체(G12=②)만 응답]**

향후 3년 이내에 귀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다소 어렵다	③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④ 충분히 가능하다

→ 응답 후 G16으로 이동

G15

## [고용의무 비대상업체(G12=③)만 응답]

귀사는 고용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① 채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② 채용할 의사가 없는 편이다	③ 채용할 의사가 있는 편이다	④ 채용할 의사가 매우 많다

## [고용의무 비대상업체(G12=③)만 응답]

G15-1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지 않아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비용(지원금)을 제공한다면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장애인근로자 신규 고용 시 성별·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

① 채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② 채용할 의사가 없는 편이다	③ 채용할 의사가 있는 편이다	④ 채용할 의사가 매우 많다

G16

귀사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2020.01.01.~2022.12.31.)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 2022년 의무고용률 달성을 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이전 실적 등으로 실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의무고용률 적용을 받는 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은 의무고용률 달성을 유무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고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 고용장려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고용의무는 50인 이상 기업에 있지만, 패널티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만 적용됩니다.

항 목	지난 3년간 경험 여부	
	있음	없음
G16-1-1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	①	②
G16-1-2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①	②

→ G16-1-1 ② 없음 응답시 G17로 이동

## G16-2-1 [고용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기업(G16-1-1=①)만 응답]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귀사에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된 편이다	④ 큰 도움이 되었다

## G16-2-2 [고용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기업(G16-1-1=①)만 응답]

고용장려금이 없었다면 귀사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겠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G17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 중 귀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직접고용               | ② 간접고용(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등) |
| ③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 ④ 금전적 기부                   |
| ⑤ 기타(직을 것: )         |                            |



####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

#### \* 연계고용 제도

부담금 대상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물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대상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G18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
- ② 고용의무 범위 확대(적용대상 사업주 범위 확대나 의무고용률 상향)
- ③ 장애인 고용장려금 증액
- ④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 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
- ⑥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확대
- ⑦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
- ⑧ 적합한 장애인력 구인 서비스 강화
- ⑨ 고용된 장애인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 강화
- ⑩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서비스 강화
- ⑪ 미이행(미고용, 고용의무 저조기업)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명단 공표, 정부 입찰제한 등)
- ⑫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비의 구입 지원
- ⑬ 기타(직을 것: )



- ①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 의무고용률 미이행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 인상
- ② 고용의무 확대: 고용의무 업체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거나,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상향 조정
- ③ 고용장려금 증액: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보다 많이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의 증액

## H. 장애인 고용 인식에 관한 사항

▣ 다음은 장애인 고용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사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H1 장애인의 작업수행에 대한 다음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H1-1 장애인은 자식, 기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1-2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1-3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노동)생산성이 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1-4 장애인은 지시를 따르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1-5 장애인은 임무 완수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2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다음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H2-1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회사의 직접적인 비용(의료비용, 교통비용 등)이 더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2-2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회사의 간접적인 비용(병가, 유급 휴가 등 이차적인 수혜)이 더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2-3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2-4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안전문제가 더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3 장애인 고용 시 타인의 반응에 대한 다음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H3-1 동료 직원들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3-2 동료 직원들과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3-3 장애인은 동료 직원들의 업무 추진을 방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3-4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H3-5 장애인 직원이 많이 있다면 비장애인 직원 채용이 어려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3-6 장애인 고용은 기업 생산성을 저하시켜 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3-7 장애인 고용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H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음 각각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H4-1 장애인의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H4-2 장애인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경영자(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지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H4-3 장애인 고용을 위한 법률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H4-4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때문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H4-5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H5

귀사는 귀사의 근로환경, 근로조건, 업무내용, 기업문화 등을 종체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어느 정도나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친화적이지 않다	② 친화적이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친화적이다	⑤ 매우 친화적이다
—————	—————	—————	—————	—————

## J. 채용계획

▣ 다음은 채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질문은 귀사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1

1년 전(2022년 8월)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 **근로자 채용이나 고용유지 상황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어려워졌다
- ② 다소 어려워졌다
- ③ 변화 없다
- ④ 다소 좋아졌다
- ⑤ 매우 좋아졌다

J2

귀사는 2023년에 신규인력(장애인, 비장애인 포함)을 이미 채용하였거나, 남은기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2023년 이미 채용하였거나, 남은기간 채용할 계획이 있다 → J2-1로 이동
- ② 2023년 채용한 적도 없고, 남은기간 채용할 계획도 없다 → J3로 이동

J2-1 귀사가 2023년에 이미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신규인력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전체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세요.

구 分	① 전체 (②+③)	2023년 신규채용 인원	
		② 기 채용 인원	③ 채용 예정 인원
J2-1-1 전체 근로자	명	명	명
J2-1-2 장애인 근로자	명	명	명

→ 장애인 근로자 기채용 및 향후 채용예정인원 합계가 0명인 경우 J2-2로 이동



※ 기 채용 인원: 2023년 1월 1일부터 응답 시점까지 신규로 채용한 인원수

※ 채용예정 인원: 응답 시점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예정인 인원수

J2-2

귀사가 2023년 전체 근로자를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이지만, 장애인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거나, 고용의무가 없어서
- ②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
- ③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 ④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
- ⑤ 사업주, 관리자, 동료 등이 장애인 채용을 꺼려서
- ⑥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장애인용 시설 및 장비·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 ⑧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 ⑨ 기타 (적을 것: \_\_\_\_\_ )



※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자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로 근로자 중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  
(공공기관: ~'21년 3.4%, '22년 이후 3.6%, / 민간사업주: ~'18년 2.9%, '19년 이후 현재 3.1%)

J3

향후 3년간 귀사의 근로자 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 分	현재 대비 줄어들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현재 대비 늘어날 것이다
J3-1 전체 근로자 수	①	②	③
J3-2 장애인 근로자 수	①	②	③

## K. 재무정보

▣ 다음은 재무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 사업장을 포함한 기업체(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조사기준 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단, 회계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정확한 재무정보를 모를 때에는 최대한 근사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K1** 최근 회계연도 기준 다음 각각에 대한 귀사의 재무정보를 응답해주세요.

▣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 범주로 응답함

구 분	재무정보	모름/무응답
K1-1 매출액(A)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 모를 경우 K1-1-1로 이동
K1-2 영업비용(B)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 모를 경우 K1-2-1로 이동
K1-3 영업이익(손실)(C=A-B)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 모를 경우 K1-3-1로 이동
K1-4 자산총액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 모를 경우 K1-4-1로 이동
K1-5 부채총액	백만원	<input type="checkbox"/> → 모를 경우 K1-5-1로 이동



매출액	지난 1년간 직접 사업활동(상품, 숙박 및 음식물 판매, 서비스 제공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수익)총액
영업비용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 매입에 투입한 매출원가와 판매와 일반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영업이익	매출액(A)-영업비용(B)
자산총액	유형자산(유형자산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 형체가 있는 자산)과 무형자산(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말함

구 분	범 주						
K1-1-1 매출액	① 5억원 미만	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④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⑥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⑦ 1,000억원 이상		
K1-2-1 영업비용	① 5억원 미만	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④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⑥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⑦ 1,000억원 이상		
K1-3-1 영업이익	① 적자	① 5억원 미만	③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⑤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⑦ 1,000억원 이상		
K1-4-1 자산총액	① 10억원 미만	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④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⑥ 1,000억원 이상			
K1-5-1 부채총액	① 5억원 미만	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④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⑥ 500억원 이상			
	③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⑤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⑦ 1,000억원 이상				
	⑤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⑥ 1,000억원 이상					
	⑦ 1,000억원 이상						

**K2** 최근 2년간 귀사의 영업이익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① 늘어났다                    ② 변화 없다                    ③ 줄어들었다

**K3** 향후 2년간 귀사의 영업이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늘어날 것                    ② 변화 없을 것                    ③ 줄어들 것

## 응답자 정보

QC1

다음은 데이터 검증 등 통계적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시고 계신 부서, 직위,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QC1-1 작성내용	응답자 1	응답자 2	응답자 3	응답자 4
0. 전 부문 응답				
A. 근로자 현황				
B. 모집과 채용				
C. 업무특성 및 노무관리				
D. 업무환경				
E. 교육훈련				
F.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G. 고용서비스 이용 및 욕구				
H. 장애인 고용 인식에 관한 사항				
J. 채용계획				
K. 재무정보				
QC1-2 성명				
QC1-3 직위				
QC1-4 핸드폰 번호				
QC1-5 팩스번호				
QC1-6 E-Mail				

★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